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

편집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
전화 75-7834
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70 호

1980. 4. 17

# 시 보

## 차 례

### ◎ 고 시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134 호: |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                | 3 |
| 제 136 호: | 서울특별시구촌지도소재지소관할구역변경.....             | 3 |
| 제 137 호: | 도시계획시설 (광장) 결정및지적승인.....             | 4 |
| 제 138 호: | 주택개량을위한채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<br>승인..... | 4 |
| 제 139 호: | 도시계획시설 (광장) 지적승인.....                | 5 |
| 제 140 호: |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              | 6 |
| 제 141 호: |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지적승인.....              | 6 |
| 제 142 호: | 창제천 7 가제 6 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.....       | 7 |
| 제 143 호: |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.....          | 7 |

<이면계속>

1. 사.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아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 116 호 : |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공고.....             | 8  |
| 제 117 호 : |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빛 환지에 정지 변경지정공고..... | 7  |
| 제 118 호 : |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   | 9  |
| 제 119 호 : |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건축계획일부변경.....        | 11 |
| 제 120 호 : | 도시계획사업 ( 시장 ) 시행계획공람공고.....    | 12 |
| 제 122 호 : | 무주부동산공고.....                   | 13 |
| 제 123 호 : |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.....              | 14 |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4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시 고시 제 109(80.3.27)로  
결정된 당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 
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

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  
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규정 제  
외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도용구청 도시정비과  
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  
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 
인다.

1980. 4. 14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연장  | 기 점     | 종 점     | 비 고   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신설 | 소로 | 3  |    | 6m | 60m | 수유동 472 | 수유동 605 | 개발제한구역 |
| "  | "  | "  |    | 6m | 60m | 도봉동산 69 | 도봉동산 61 |        |
| "  | "  | "  |    | 6m | 90m | 도봉동산 69 | 도봉동산 93 |        |

\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6 호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지소관할구역변경

1980.4.1자로 구로구, 동작구의  
문구 중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농

촌지도소 지소 관할구역이 변경되었  
기 다음과 같이 관할 구역을 변경  
고시 한다.

1980. 4. .

서울특별시 장 정 상 천

다 음

| 변 경 전   | 변 경 후   |
|---|---|
| 가. 명칭 :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동북지소<br>위치 :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 97<br>관할구역 : 성동구, 성북구, 동대문구<br>도봉구, 천호출장소 | 가. 명칭 :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동북지소<br>위치 :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 97<br>관할구역 : 성동구, 성북구, 동대문<br>구, 도봉구, 강동구 |

| 번 | 경    | 전                    | 번 | 경    | 후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나 | 명칭   |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서부지소       | 나 | 명칭   |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서부지소     |
|   | 위치   | 서울특별시명동포구목동 405-233  |   | 위치   |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본동 1-103 |
|   | 관할구역 | 명동포구, 마포구, 양서, 은평출장소 |   | 관할구역 | 구로구, 강서구, 마포구, 은평구 |
| 다 | 명칭   |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남부지소       | 다 | 명칭   |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남부지소     |
|   | 위치   |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92-6     |   | 위치   |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926    |
|   | 관할구역 | 강남구 (친호출장소제외) 관악구    |   | 관할구역 | 강남구, 관악구           |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 호

도시계획시설 (광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광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 10.10) 의 권한위임 사함에 의거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농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4. 16.

서울특별시장

○ 광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| 구분 | 번호  | 시설명   | 위치       | 면적     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|
| 신설 | 150 | 강변역광장 | 성동구구의동일대 | 13,000㎡ |    |

\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  
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

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

서울시공고 제 12 호(80.1.14) 로 각각 공람공고한 바 있는 미아 5 구역과 홍제 6 구역에 대하여 관계인의 의견서 심사후 일부계획을 변경하고
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와 건축법 제 33 조의 2 와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

동 구역 관리처문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한다.

3. 고시내용  
가. 관리처문계획  
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개별

농보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구청 건축국 재개발 2과, 관할구청 시민촌 및 주택과에 비치 열람함.  
나. 건축계획

1) 건축물의 규모

| 구분   | 층수 | 건축면적<br>(세대당) | 건폐율   | 용적율  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단독주택 | 2층 | 50㎡이상         | 50%이하 | 150%이하 | 단독지청에 한함.         |
| 공동   | 2  | 33            | "     | 100    | 미아 5, 종제 6 (근처제외) |
| "    | 3  | 33            | 35%이하 | 120    | "                 |
| 아파트  | 4  | 33            | 30    | 120    | 미아 5              |

2) 건축물의 높이

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층수로 하되,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 167조 규정을 적용한다.

3) 건축물의 모양

건축물의 평면은 구역전체 경관조성에 적합한 형태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입형으로 하여야 한다.

4) 건축방법

주민자택에 의하여 당시 지정업체로 하여금 건축함.

5) 건축기간 및 합의기간

건축기간: 인가일로부터 1년간  
(단, 합의는 80. . . . . 까지)

6) 기타사항

동 구역 건축계획 승인서와

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함.  
1980. 4. 16.  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9 호

도시계획시설(광장)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91 호(79.4.7)로 지정 고시된 반포 7 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3 조와 건설부고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지적고시 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4. 16.  
서울특별시장

| ● 관할지적승인소서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구분         | 종장명   | 위 치           | 면적(㎡)  | 비 고 |
| 지적승인       | 방화7공가 | 강남구안곡서초304B/L | 38,000 |     |

●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㉠ 서울특별시고시제 140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177 호(62.12. 8)로  
 서울특별시고시제 79 호(77. 3. 14)로  
 교서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  
 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  
 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  
 제 2항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 
 제 463 호(79. 12. 10)의 규정에 의  
 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  
 치하여 토지및 건물외 소유자와 이  
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 4.

서울특별시청

1. 사업시행의위키 : 관악구본동 223 ~  
 대방동 92번지
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충신로확장공사

3. 사업규모 : 폭=36m~35m  
 도로  
 길장=2,400m

●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조서

| 구 분 | 등급 | 류번 | 폭원 | 연장  | 기 점        | 종 점        | 비 고 |
|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기상  | 소로 | 2  | 8m | 46m | 방화동 621-24 | 방화동 621-25 |     |
| 변경  | "  | 2  | "  | 34m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
●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하수도 D=600mm, L=4,800m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
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사업인가일 ~  
 1981. 12. 31.

6. 사용토지수용할재산의소재지 : 별첨생략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 
 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판  
 제인주소, 성명 : 별첨토지조서생략

㉡ 서울특별시고시제 141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 
 을 도시계획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  
 제 463 호(79. 12. 10)의 권한위임규  
 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  
 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 
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  
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4. 17.

서울특별시청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42 호

청계천 7가재 6지구 재개발사업  
관리처분 계획인가

서울특별시 고시제 86호(78.3.9)로  
시행인가된 청계천 7가 재 6지구 재  
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 
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  
을 인가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 
고시한다.

1980.4.17

서울특별시장

1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청계천 7가  
재 6지구 재개발사업
2. 시행구역면적 : 636명(2,102.48㎡)
3. 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
가. 명칭 : 청계천 7가 재 6지구 재  
개발조합  
나.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 
중구 신당동 204-26
4.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의내역  
가. 토 지 2,092 ㎡  
건축부지(대지) 1,621.62 ㎡  
도로 및 주차장 470.38 ㎡  
나. 건축물  
구조 : 철근콘크리트  
면적 : 지하층 1,042.42 ㎡

지상 1층 1,054.23 ㎡  
지상 2층 1,054.23 ㎡  
지상 3층 1,054.23 ㎡  
옥 합 71.06 ㎡  
계 4,274.17 ㎡

5. 분양대상 종전토지 및 건물  
가. 토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 
204-26, 193-14, 204-27, 193-19  
193-21, 193-23, 193-11, 217-64,  
217-65, 217-11, 217-66, 193-33,  
193-35, 204-18 (건물분양은 제외)  
계 14 필지  
나. 건축물 : 해당사항 없음
6.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전토지  
및 건축물  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3-12,  
222-6  
계 2 필지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43 호

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  
정류장) 변경결정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여객자  
동차 정류장)을 도시계획법 제 12  
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 
(79.12.10)의 권한위임 사항에  
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 
이를 고시한다.

2. 판제 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  
1980.4.17  
서울특별시장

○ 설정조서

| 구분 | 시설명      | 위치               | 규모     | 비고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기정 | 여객자동차정류장 | 성동구성수동 2가 234 일대 | 3,793㎡ |        |
| 변경 | "        | " 230 일대         | 6,537㎡ | 증2,734 |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6 호

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공고  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4 조에 의

한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0.4.15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| 업체명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| 대표자 | 허가번호     | 제조구분         | 취소사유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희성전자 (주) | 영등포구 가리봉동 327-23 | 박우만 | 1-11-7   | 전기용품기계기구류제조  | 허가증지진반납           |
| 장우공업사    | 북산동 156-1 가      | 김상길 | 1- 8-93  | 전동력용용기계기구류제조 |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 7 조 위반 |
| 원 일 전 기  | 당산동 237-42       | 채수철 | 1- 7-128 | 전열기구류제조      | "                 |
| 대성전기산업사  | 도림동 181-1        | 이정수 | 1- 7-143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|
| 동양정공 (주) | "                | 한영근 | 1- 7-106 | "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|
| Y & J    | 양성동 5 가 16       | 박용목 | 1- 8-22  | 전동력용용기계기구류제조 | "                 |
| "        | "                | "   | 1- 7-65  | 전열기구류제조      | "                 |
| 최 전 사    | 독산동 290-35       | 최갑수 | 1- 5-14  | 소형단상변압기류제조   | 허가증지진반납           |

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17 호

환지계획 일부 변경인가  
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

1. 영동1지구(추가)구획정리 사업  
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  
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 
제 64 호(80.3.11)로 공람공고한  
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  
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  
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
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  
획을 일부 변경인가 하고 동법  
제 56 조의 규정에 외거 환지에정  
지불 일부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  
한다.

2.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 
사용수익을 공고일로 부터 토지소  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.  
다만 정지 공사 미완료 또는 다  
른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 
없는 토지는 정지 공사 완료 및  
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 부터  
사용수익을 하게 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 
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 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 
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 
통보될 것이나, 미수령 되는 토지

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 
로 알음한다.

1980.4.15

서울특별시장

(사 인 내 역)

가. 사업명 : 영동1지구(추가)토지구  
획정리사업

나. 변경위치 : 관악구 방배동 420 의  
2 호 일대

다. 변경면적 : 1,748.80 평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1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
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 제 35 호(74.4.1)  
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내  
경상고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 
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 
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  
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 
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 
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  
하고자 이에 공고한다.
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 
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 
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 
가득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시민봉사실 과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가. 공고장소 : 성동구청 게시판  
 나. 공고기간 : 1980.4.14-1980.4.27(14일간)  
 1980.4.14  
 서울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장

0. 공삼개요

1. 사업의 시행자 : 성동구 금호동 2가 대경상고 진입로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대경상고 진입로 도로확장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(폭 8미터, 길이 348미터)

4. 사업시행자 : 성동구청장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
 착공예정일 : 1980. 4  
 준공예정일 : 1980.1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로지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: 다음

로 지 조 서

| 순위 | 소재지   | 분할전표시 |    |     | 분할후표시<br>(수용대장) |    |    | 소유자   |     | 관계인 |
|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-|-----|
|    |       | 지번    | 지목 | 지적  | 지번              | 지목 | 지적 | 주소    | 성명  |     |
| 1  | 금호 2가 | 44    | 대  | 7   | 44-1            | 대  | 1  | 14    | 김인옥 |     |
| 2  | "     | 43    | "  | 96  | 43-1            | "  | 6  | 43    | 진영실 |     |
| 3  | "     | 42    | "  | 63  | 42-1            | "  | 6  | 42    | 김진학 |     |
| 4  | "     | 41    | "  | 53  | 41-1            | "  | 5  | 41    | 김정근 |     |
| 5  | "     | 40    | "  | 66  | 40-1            | "  | 10 | 40    | 박성봉 |     |
| 6  | "     | 39    | "  | 116 | 39-1            | "  | 20 | 39    | 정경순 |     |
| 7  | "     | 38    | "  | 86  | 38-1            | "  | 27 | 38    | 심봉기 |     |
| 8  | "     | 30    | "  | 99  | 30-1            | "  | 21 | 30    | 신동욱 |     |
| 9  | "     | 29    | "  | 99  | 29-1            | "  | 6  | 29    | 홍선화 |     |
| 10 | "     | 23    | "  | 40  | 23-1            | "  | 32 | 23    | 김문필 |     |
| 11 | "     | 24    | "  | 76  | 24-1            | "  | 32 | 27-13 | 정인태 |     |
| 12 | "     | 25    | "  | 76  | 25-1            | "  | 4  | 25    | 주복실 |     |
| 13 | "     | 45    | "  | 96  | 45-1            | "  | 3  | 45    | 최대용 |     |

| 순위 | 소재지   | 분할전표시 |    |     | 분할후표시<br>(수동대장) |    |    | 소유자        |     | 관세인 |
|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
|    |       | 지번    | 지목 | 지적  | 지번              | 지목 | 지적 | 주소         | 성명  |     |
| 14 | 금호 2가 | 46    | 대  | 106 | 46-1            | 대  | 30 |            | 조용복 |     |
| 15 | "     | 47    | "  | 175 | 47-1            | "  | 19 |            | 임영태 |     |
| 16 | "     | 48    | "  | 106 | 48-2            | "  | 9  | 48         | 박대영 |     |
| 17 | "     | 62    | "  | 188 | 62-1            | "  | 16 | 62         | 김명일 |     |
| 18 | "     | 63    | "  | 79  | 63-1            | "  | 24 | 63         | 장희상 |     |
| 19 | "     | 64    | "  | 139 | 64-1            | "  | 2  | 21         | 신동욱 |     |
| 20 | "     | 21    | "  | 73  | 21-1            | "  | 12 | 270-11     | "   |     |
| 21 | "     | 20    | "  | 198 | 20-1            | "  | 20 | 선당동 328-55 | 안홍수 |     |
| 22 | "     | 5     | "  | 102 | 5-1             | "  | 16 |            | 손한석 |     |
| 23 | "     | 4     | "  | 79  | 4-2             | "  | 9  |            | 박성환 |     |
| 24 | "     | 3     | "  | 46  | 3-1             | "  | 10 |            | 정운화 |     |
| 25 | "     | 2     | "  | 20  | 2-1             | "  | 7  | 2          | 김석봉 |     |
| 26 | "     | 1     | "  | 7   | 1-1             | "  | 6  |            | 이한승 |     |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19 호

1980.4.15

서울특별시장

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 
건축계획일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8 호 (75.11.8) 및 제 79 호 (78.3.9) 로 확정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제 33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52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기 이에 공고한다.

가. 공고내용 :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계획중 삼화분구 건축계획 (10층에서 12층으로 변경)

나. 관계도서는 당시 건축국 재개발 1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0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 
시행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4 호 (80.2.13)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대치동 623, 624 번지 시장개설 구간 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한다. (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.12.10)
2.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송달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련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4.15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- 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 대치동 623, 624 번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
- 다. 사업의 규모: 1,324.5 평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강남구 대치동 624 의림상가 (주) 대표이사 선병심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 - 1) 착수예정일: 1980. 5.
  - 2) 준공예정일: 1980.12.
- 바. 공람기간: 준공일로부터 14 일간
- 사.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: 다음
- 아. 기타사항: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.

토 지 조 서

| 위 치        | 지 번 | 지 목 | 지 적     | 소 유 자                |     | 이 해 판 계 인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| 성 명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|
| 강남구<br>대치동 | 623 | 건   | 2,254 ㎡ | 도봉구쌍문동<br>421 번지 8 통 | 선병심 | 강남구반포동<br>274-56 경남 APT | 황와영 |
|            | 624 |     | 2,241 ㎡ | 1 반                  |     | 7 동 405 호               |     |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122 호

부주부동산공고

다음 표시의 토지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「무주부동산」으로 공고하니 당해 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그 권리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공고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.

1. 토지의 표시 : 25 필지 12,342.5 평 (별첨목록참조)
2. 신고 및 공람기간 : 1980년 4월 21일 ~ 1980년 10월 20일
3. 신고처 및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(재무과)
4. 신고사항 : 신고서 (소정서식) 및 권리주장 증빙자료 (신고서 용지는 각구청 재무과에서 배부함)
5. 기타문의사항 : 시청 관재과 (75-6836), 각구청 재무과

1980년 4월 19일  
서울특별시장 정상천

부 주 부 동 산 목 록

| 연번 | 재산소재지   | 지번     | 지목 | 지적(坪) | 비고  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1  | 동대문구상봉동 | 49-1   | 대  | 119.2 | 미등기, 구획정리완료 |
| 2  | "       | 50-4   | 대  | 75.6  | " "         |
| 3  | "       | 107-16 | 대  | 52.5  | " "         |
| 4  | 동대문구망우동 | 147-24 | 대  | 50.2  | " "         |
| 5  | "       | 352-44 | 대  | 29    | " "         |
| 6  | 구로구가리봉동 | 3-5    | 전  | 4     | " 지적복구      |
| 7  | 구로구시흥동  | 570-1  | 잡  | 211   | " "         |
| 8  | "       | 570-2  | 잡  | 214   | " "         |
| 9  | "       | 571-1  | 전  | 350   | " "         |
| 10 | "       | 571-2  | 전  | 58    | " "         |
| 11 | "       | 572-1  | 전  | 587   | " "         |
| 12 | "       | 572-2  | 전  | 394   | " "         |
| 13 | "       | 573-1  | 전  | 249   | " "         |

| 연번 | 재산소재지  | 지번     | 지역 | 지적(평) | 비고 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|
| 14 | 구로구시흥동 | 573-2  | 전  | 174   | 미동기 지적 복구 |
| 15 | "      | 576-2  | 임  | 292   | " "       |
| 16 | "      | 582-2  | 전  | 1,251 | " "       |
| 17 | "      | 582-3  | 답  | 372   | " "       |
| 18 | "      | 582-4  | "  | 139   | " "       |
| 19 | "      | 583-3  | "  | 115   | " "       |
| 20 | "      | 583-4  | "  | 434   | " "       |
| 21 | "      | 607-2  | "  | 234   | " "       |
| 22 | 도봉구월계동 | 산 17-1 | 임  | 4,981 | 미동기, 미 복구 |
| 23 | 강남구새곡동 | 31     | "  | 1,812 | " "       |
| 24 | 강동구풍납동 | 96-3   | 전  | 7     | " "       |
| 25 | "      | 96-4   | "  | 8     | " "       |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23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암사, 천호,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, 변경사유가 있어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와 동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환지계획 환지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
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고 있다.

1980. 4. 17.

서울특별시장

변경내역

- 가. 사업명 : 암사, 천호,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위치 : 암사, 천호, 삼성동 각 일부
- 다. 변경면적 : 9,350.90평